



학부(과)장회 규정

제정일	2011. 5. 1
개정일	2021. 4.15
개정차수	3차
담당부서	학사운영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부(과)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구성) ① 학부(과)장회는 행정처·국장 및 학부(과)장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4.11. 1)

② 의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 (개정 2021. 4.15)

③ 임기는 각 보직 기간으로 한다.

제 3조 (회의의 소집과 의결)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의장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인원 2/3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4조 (기능) ① 학부(과)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. (개정 2020. 8.10)

1. 학칙 및 학사내규에 관한 사항 (개정 2020. 8.10)

2. 기타 의장이 안전에 부치는 사항

② 학부(과)장회는 교내외업무 주요사항에 관하여 공지 및 논의할 수 있다.

제 5조 (회의록 작성) 학부(과)장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, 서명부에는 의장을 포함한 과반수이상의 의원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 8.10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